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檢 計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3호로 2023년 5월 4일 차인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,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개정 변경
- 나. 목적, 정의, 다른법령과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4조)
- 다. 아동학대 신고의무,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.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교육, 홍보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 ~ 제13조)
- 바.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3. 5. 4. ~ 2023. 5. 8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,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O 주요 개정내용으로

- 제명을 현행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여 제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였고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였으며,

-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.
- 안 제4조에서는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각각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조항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기존 '아동、여성안전 지역연대'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.
- 안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 대상을 '관련 기관 또는 시설'로 규정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의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아동권리보장원의 '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'(이하 "통계"라 한다) 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

특히 2021년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21.7%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.

(단위: 건, %)

	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아동학대	건수	22,367	24,604	30,045	30,905	37,605
사례	증가율	19.6	10.0	22.1	2.9	21.7

-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를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,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아동복지법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- 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· 운영
- 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- ② 생략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- 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・조사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 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-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⑥ ~ ⑦ 생략
- 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담의료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~ ④ 생략

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-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 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 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 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1 ~ 25. 생략
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